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실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21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한강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다양한 생물종의 보금자리이자 도시 생태계의 핵심 축입니다. 그러나 최근 그레이트 한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해 한강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 이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한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한강공원의 목적에서 생태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증대, 이용환경 개선 등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생물다양성’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 제3호).

다. 한강공원 생태 보전 시책의 장·단기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분석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제4호).

라. 시장의 책무로 한강의 환경 훼손 최소화 및 홍보·참여 활성화 내용을 신설함(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

마. 시민의 책무로 한강 생태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시책에 대한 적극적 협력 의무를 추가함(안 제6조 제2항).

바. 한강 시책 추진에 따른 생태환경·기능·생물다양성 변화 등 시책 집행의 효과와 실적 현황을 추가함(안 제10조 제2항 제2호).

사. 한강 이용현황 및 프로그램·행사 참여현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 제2항 제3호).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